



시 보



제1540호 2022. 3. 21.(월)

규 칙

-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----- 2

공 고

- 「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」제정(안) 입법예고 ----- 4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3월 14일

목 포 시 장 김 종 식

목포시 규칙 제 1832 호

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 본문 중 “7일”을 “14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목포시 공고 제 2022 - 505호

「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」제정 조례안 입법 예고

「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3월 21일

목 포 시 장

1. 조 례 명 : 「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,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1조~제3조 :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
- 제4조~제5조 : 폭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계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
- 제6조~제7조 : 폭염 대응을 위한 예찰활동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8조~제9조 :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제10조~제13조 : 폭염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그 밖의 사항

4. 제정 조례(안) : 별첨

5. 관계법령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3조의2(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)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: 해당없음

7. 예산 사항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3. 21. ~ 2022. 4. 11.(22일간)

9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10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의 입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안전총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
- 라. 제출서식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[우58724]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(용당동), 목포시청 민원동 3층 안전총괄과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안전총괄과 (☎061-270-3620, FAX 270-8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목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폭염”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목포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.
- 2. “폭염특보”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,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.
- 3. “무더위쉼터”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.
- 4. “폭염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
 - 다.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
 - 마. 그 밖에 목포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.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목포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대책 수립 등)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목포시 폭염대응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표 및 추진방향
2. 목포시 폭염 현황 및 전망
3.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
4.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
5. 폭염 안전교육 추진
6.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
7.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관계 부서의 협조)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,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폭염취약지역 예찰·관리활동)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·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.

1. 재난 예보·경보 시설,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
2.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
3.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재난도우미 운영)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1. 통장
- 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- 4.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,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폭염취약계층 지원)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선풍기 등 냉방물품
- 2. 온열질환의료비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)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지붕녹화,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
- 2. 안개분사, 자동살수시스템, 분수대 등 수경시설
- 3. 그늘막시설
- 4.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10조(폭염 안전교육 실시)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

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, 청소년, 건설현장 노동자,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민제안 등) ① 시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